

# 업 무 요 지

## 제 목

- 주민이 참여하여 이루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 예산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을 확대 추진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 추진목표

목표	재정·숙의 민주주의 구현	
방향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실질적 주민참여예산 실현	
운영	참여예산 규모 확대·유지	○ 목표액 : 20억 이상*일반참여형
	주민의사 반영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전과정에 참여 ○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확대·강화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	○ 다양한 홍보채널 적극 활용 ○ 맞춤형 홍보 캠페인 추진 ○ 맞춤형 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전파(리플렛, 표지판)
	민관협력의 안착과 제도화	○ 민관 숙의·공론화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민관 숙의·조정절차 강화

### □ 운영절차

주민제안	사업 구체화(숙의/공론)		예산반영
주민의견수렴	사업 검토·보완	공론화 및 선정	참여예산 반영
▶구 홈페이지 ▶방문·우편·팩스 등 ▶동 주민자치회 ▶각종 위원회	▶사업부서 적격성 검토 ▶분과위원회별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재정컨설팅 및 민관숙의	▶주민투표 ▶민관협의회 선정	▶예산안 편성 ▶예산안 심의 확정 ▶주민참여예산 공개

## 순 서

I. 추진개요	1
II. 2023년 운영현황 및 2024년 추진과제	
1. 2023년 운영현황	2
2. 2024년 추진과제	3
III. 2024년 운영개요	4
IV. 2024년 추진일정	5
V. 세부 추진계획	
1.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및 운영	6
2. 참여예산학교 운영	9
3.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12
4. 예산편성 외 주민참여	17
5. 홍보계획	19
VI. 행정사항	
<b>[붙임 1] 신청서식</b>	
[서식1] 사업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21
[서식2] 주민제안사업 검토서	23
[서식3] 주민제안사업 심사평가표	25
[서식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26
[서식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29
[서식6] 우선순위 결정서, 목록	31
[서식7]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서식	33
[서식8]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리카드	35
<b>[참고 1]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b>	36

- 주민이 참여하여 이루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은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확대하여 성공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I. 추진개요

###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2. 추진목적

-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구정 주요사업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운영 촉진
- 동 주민자치회의 선도로 마을문제 해결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과 공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행정 실현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 선정 및 전문성 있는 감리 등을 통하여 주민수요에 적합한 사업추진으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

## II. 2023년 운영현황 및 2024년 추진과제

### 1. 2023년 운영현황



###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추진(24년 실행)

- 2022년 72억 → 2023년 77.9억 → 2024년 19.2억

(단위:천원)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사업수	사업비
일반참여형	92	3,532,849	38	2,569,750	56	1,922,382
주민숙원형	6	2,600,000	10	3,920,400		
주민자치회형	120	1,068,971	121	1,304,360	<b>*일반참여형 추진</b>	
<b>총계</b>	<b>218</b>	<b>7,201,418</b>	<b>169</b>	<b>7,794,510</b>	<b>56</b>	<b>1,922,382</b>

- 주민자치회형 참여예산 중단(인천시 중단, 향후 시범사업 등으로 보완)등으로 인하여 일반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추진

□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 참여

○ 2022년 25,086명 → 2023년 28,415명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인원 수	인원 수
관련 위원 수 (주민자치포함)	847	884
교육 참여자	957	404
사업 제안자	326	431
숙의과정 참여자	1,026	846
주민투표 수	21,930	25,850
<b>총 계</b>	<b>25,086</b>	<b>28,415</b>

※ 참여자수 산정 기준 : 2023행정안전부 평가항목 (참여자 수 평가 기준)

## 2. 2024년 추진과제

□ 주민의사 반영 확대

-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적극적 운영 방안 모색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강화 :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참여 및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확대 운영을 통한 평가·환류 강화
- 2025년도 예산정책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

□ 동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내실 강화

- 동에서 필요한 생활 밀착형 사업 발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동 주민자치회 의제발굴 회의 시 퍼실리테이터 지원,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전략 수립

- 다양한 홍보채널 적극 활용(구 홈페이지, 전광판, SNS, 홍보물)
- 맞춤형 홍보 캠페인 추진으로 주민 접근성 향상
- 맞춤형 예산학교 운영으로 주민참여 확대

□ 민관 협력의 안착과 제도화

- 민관 숙의·공론화를 통한 정책과제 도출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민관 숙의·조정 절차 강화

## Ⅲ. 2024년도 운영개요

□ 개 요

단계	①제안	②검토,숙의	③심사	④선정	⑤반영
주체	서귀 주민 누구나, 서귀 사업부서	사업부서, 분과위원회, 제안자,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
역할	예산편성 관련 의견 수렴·제출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우선순위 결정 및 반영사항 심의	총괄 심의·조정 및 확정	예산(안) 확정 및 의회 제출

제안자	사업 제안내용
서귀 주민 누구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일반주민 등 제안사업
사업부서	평소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직접적인 주민제안 없이 사업부서의 판단으로 제안, 추진

## IV. 2024년도 추진일정

구분	추진사항	시기	주요내용
계획수립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공고	1월	▶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15일 이상 공고
예산학교	예산학교 운영	2-5월	▶ 기본교육 : 대상 - 서구 주민 누구나 ▶ 심화교육 : 주민참여예산 위원 등
주민제안	주민참여 제안사업 신청·접수	상시	▶ 구 홈페이지, fax접수 등
		3-5월 (집중)	▶ 민원요청사업(주민숙원사업) 접수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업 발굴 등
사업검토	사업검토 및 보완, 유사사업 통폐합 등	5월	▶ 사업부서 : 제안자 의견 청취 후 관련법령, 사업타당성, 적격성 등 검토, 사업 구체화하여 사업검토서 작성, 유사사업 통폐합 의견제시
사업심의	분과위원회 활동 (민원숙의·조정)	6월	▶ 1차 심의 : 사업부서 참석, 검토서 질의·답변
		7월초	▶ 사업부서 : 1차 심의 질의사항 포함, 조정된 예산액 포함하여 보완된 사업검토서 제출
		7월말	▶ 2·3차 심의 : 제안사업 평가표 작성, 우선순위 선정
		12월	▶ 추진사업 모니터링 : 2024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주민의견수렴	온라인 및 현장투표	8월	▶ 온라인 주민투표(모바일, 구 홈페이지 참여) ▶ 현장 주민투표(각동 주민센터 투표소 마련)
	주민의견 수렴	8월	▶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
사업선정	예산조정	10-11월	▶ 예산반영금액 확정 : 사업부서+예산팀
	민관협의회 최종 선정	9월	▶ 투표, 심사점수 합산으로 정한 사업을 조정·반영하여 예산반영여부 최종 결정 ▶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안 편성(사업부서예산) ▶ 최종 사업설명서 작성 및 e호조 입력 ▶ 2025년 예산안 서구의회 제출
예산편성	예산편성 예산안 제출	11월	▶ 2025년 예산안 서구의회 제출
	예산심의 확정	12월	▶ 본회의 의결로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확정
참여예산위원모집	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개모집	11-12월	▶ 위원 공개모집 및 위촉식 개최

## V. 세부 추진계획

### 1.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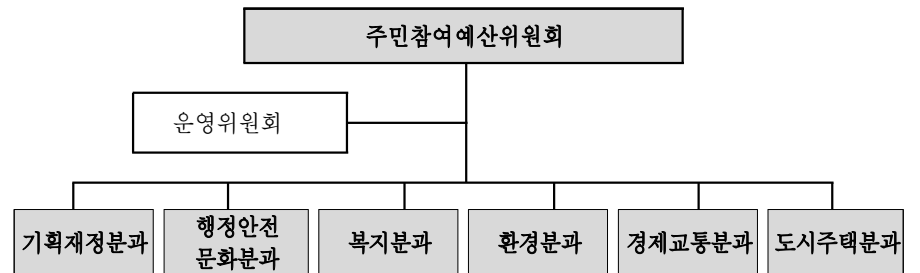
#### □ 위원회 현황

구분	동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민관협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수	884명 (23개동)	93명 (공모60%, 추천40%)	18명	8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원)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2년 (2회 연임가능)	2년 (2회 연임가능)	2년 (2회 연임가능)
주요기능	의제발굴, 우선순위 심의 등	주민 제안사업 반영여부, 우선순위 심의 등	주민 제안사업 총괄 심의·조정 및 확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요결정사항 통합·조정

#### 1-1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

#### □ 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개모집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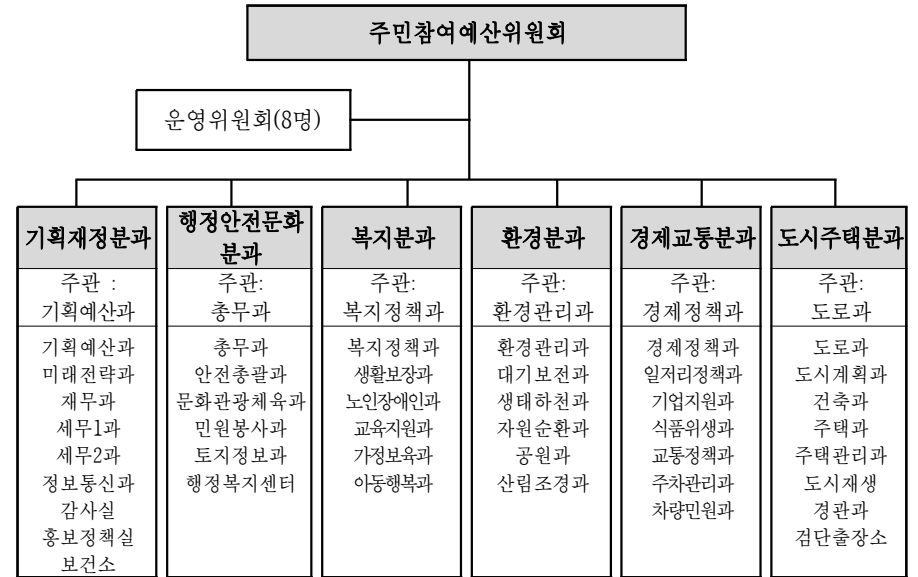


- 모집기간 : 2024년 10월 ~ 11월
- 모집인원 : 100여명 내외 (분과별 16명 내외)
- 임 기 : 2년 (2회한 연임가능)
- 임원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 주요기능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주민제안사업 의견 심의 조정, 구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심의
  -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
  -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모니터링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분과위원회 운영

- 분과구성 : 6개
- 위원수 : 분과위원회별 16명 내외
- 임원구성 : 분과위원장 1명, 간사 1명 (\*분과별 주요부서 주무담당)
- 회의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 소관분과의 제안사업을 제출한 위원은 해당사업 심사 시 제척
- 주요기능
  -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및 우선순위 선정
  -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
  - 일반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 등

○ 분과구성도



□ 운영위원회 운영

- 위원수 : 8명 내외
- 구 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 임원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 회의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정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개최
- 주요기능 : 주민참여예산제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협의·조정
  -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에 관한 의견 제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분과위원회)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분과위원회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1-2 참여예산 민관협의회**

- 운영시기 : 2024년 연중
- 위원수 : 총 18명
- 위원구성
  -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 부서 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 임원구성
  - 공동위원장 2명(\*구청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1명(\*위원 중 호선), 간사 1명(\*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 주요기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립된 주민제안사업의 의견 심의
  -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 관련 사항 심의·조정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1 기본교육**




- 운영목적
  - 일반 주민 눈높이에 맞춘 사례 위주의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많은 주민들의 참가를 이끌어 냄
- 운영시기 : 2024. 2. ~ 5.
- 운영방법 : 대면교육 (23개 동 강사 파견)
- 대 상
  - 주민자치회 등 유관기관/ 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
  - 관내 영업소,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 임직원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기본 이해와 사례
  - 2024 주민참여예산 운영 일정, 주민 제안 방법

**2-2 심화교육**

- 운영목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동 주민자치회 위원의 참여예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 운영시기 : 2024. 3. ~ 5.
- 운영방법 : 대면교육
- 대 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 동 주민자치회 위원
- 교육내용
  - 의제 발굴, 제안서 작성 방법
  - 주민제안사업 심의방법,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방법
  - 성인지 교육

**2. 참여예산학교 운영**

※ 2024년 참여예산학교 상세운영계획 별도 수립

<p>상반기</p>  <p>주민 기본교육 위원 심화교육</p>	<p>하반기</p>  <p>사업 담당자 교육</p>	<p>연 중</p>  <p>수준별 예산학교 찾아가는 예산학교</p>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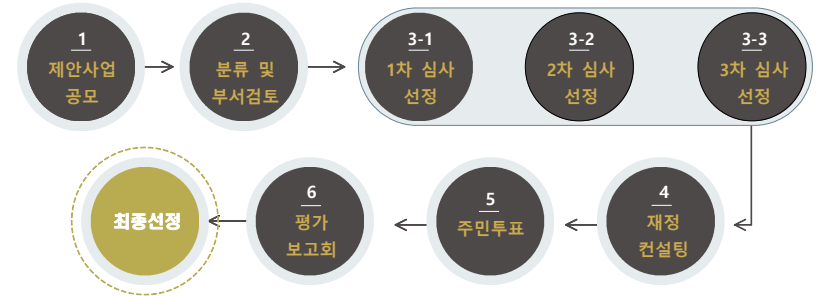
### 2-3 수준별 예산학교

- 운영목적
  - 예산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참여민주주의 구현
  -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주민참여 역량 증진 및 참여기회 확대
- 운영시기 : 2024. 연중
- 운영방법 : 각 계층 회의 형태에 따라 대면/비대면
- 교육내용
  - 어린이참여위원회, 아동청소년분과, 청년위원회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예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4 사업 담당자 교육

- 운영목적
  - 주민참여예산 사업 담당자들에게 역할과 태도 실무적인 처리 등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함
- 운영시기 : 2024년 하반기
- 운영방법 : 집합교육
- 교육내용
  - 참여예산의 필요성과 제도이해
  - 참여예산 사업 검토 방법 및 노하우 등 실무자 교육

## 3.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 3-1 제안사업 공모

- 신청기간 : 2024.3. ~ 5. (\*2025회계년도 본예산 사업 대상)
  - 상시 제안 가능하며, 위 기간 이후의 접수 건은 차년도 예산에 포함
- 참여방법
  - (온라인) 서구 주민참여예산홈페이지에 의견 등록
    - 서구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속(포털 검색)
    - 참여하기 배너 터치 ⇒ 본인인증 ⇒ 주민제안 사업신청
  - (오프라인) 행정기관 방문·우편·팩스를 통한 주민 의견 제안
    -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 기획예산과 ☎ 032)560-4053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팩스) 032-560-2704
    -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등 자생단체를 통한 의견 전달

### 3-2 제안사업 분류 및 부서검토

- 기간 : 2024. 5. (\*2025회계년도 본예산 사업 대상)
- 제안사업 분류 \*사업성격 및 추진 주체에 따라 분류
  - 일반참여형 사업 : 기획예산과 → 부서별 배정
    - 사업부서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자본적 성격)
      - 예) 공공시설물 등 설치·보수, 환경개선사업
  - 2개이상 부서 해당사업 : 주관부서, 협조부서 지정 후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 등 검토내용 취합, 작성 제출
  - 이관사업 : 타 기관으로 이송이첩(공문발송)
- 부서검토서 작성방법
  - 법령, 조례, 사업 타당성, 유사사업 통폐합 등 검토
  - 제안자의 취지 및 제안사업 구체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제안 의도 정확히 파악
  - 제안내용이 미흡하거나 참여예산사업으로 부적정한 경우, 제안자와 협의하여 가능한 방향 모색 등 수정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불가 시 근거, 대안제시 등)
  -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 등 면밀한 검토
    - 건설사업(도로, 교통, 녹지 등)의 경우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첨부
  - ※ 제안내용이 기 추진중인 사업의 경우 사업을 개선 또는 확대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비가 증가한 경우 참여예산사업으로 분류·검토
  - 참여예산사업으로 적정 여부 파악

#### 참여예산 부적정 사업

-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반되는 사업
- 대규모 시설투자사업 및 계속사업
- 타기관 소관에 해당하는 사업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 일부지역/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 동 또는 자생단체 주관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축제·행사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련 사업

### 3-3 제안사업 심사·선정

- 일반참여형 사업, 주민숙원사업
  - 심사주체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 사업대상
    - 일반참여형 : 다양한 경로로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
    - 주민숙원사업
      - 다양한 경로(민원발생, 현장방문시 주민건의사항, 각종 위원회·토론회·공청회 등)의 주민제안 사업 중 부서검토 및 숙의가 완료된 사업
  - 심사시기 : 2024. 6~7월
  - 운영주관

구분	해당부서	주무부서(간사)
기획재정분과	실·기획재정국, 보건소	기획예산과(예산담당)
행정안전문화분과	행정안전문화국, 동	총무과(총무담당)
복지분과	복지국	복지정책과(복지정책담당)
환경분과	환경국	환경관리과(환경정책담당)
경제교통분과	경제국	경제정책과(경제정책담당)
도시주택분과	도시주택국, 출장소	도로과(건설행정담당)

○ 주무부서 역할

- ※ 분과위원회 운영(사업심사, 심의회의, 모니터링, 공청회 등) 적극 협조
  - 사업제안서, 사업부서 검토의견, 분과위원 심의의견 등을 참고하여 사업 적정성 여부 검토 및 배제사업 선정
  - 구 총회에 상정할 분과위원회별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예산사업 분기별 관리카드 취합·제출

○ 간사 역할

- 회의자료 준비 및 진행, 위원·의견제출자·사업부서 담당자 참석 연락
- 회의결과 정리, 회의결과 관련부서 전달 등 분과위원회 회의 전반 지원

- 최종선정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순 우선순위 선정 및 위원 협의를 통한 선정

**3-4 참여예산 재정컨설팅**

- 목 적 : 분과별 우선순위 선정 전에 예산편성 적격 여부 컨설팅
- 기 간 : 2024. 7월 중
- 대 상 : 참여예산 부적정 사업 외 제안사업
- 방 법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적격 여부 검토(기획예산과)

**3-5 주민투표**

- 투표대상 : 2025회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안)
- 기 간 : 2024. 8월 중
- 투표방법 : 온라인투표(모바일,PC활용), 현장투표(투표소 설치)
- 장 소 : 온라인, 서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 투표 대상자 : 주민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서구 주민
- 주민투표 결과 : 온라인투표와 현장투표 결과 합산 집계하여 최종사업 선정 및 결과 공개

**3-6 평가보고회**

- 시 기 : 2024. 12월 중
- 장 소 : 미정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
- 사업범위 : 일반참여형, 주민숙원형
-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별 주민제안사업 설명회 : 프리젠테이션 진행 등
  - 주민투표 결과(사전투표+현장투표) 집계하여 개표 결과 총회 보고
  - 사전투표점수(온라인,현장),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우선순위 선정결과 보고
  - 2024년 區 주민참여예산 실행 우수사례 공유

**3-7 최종 선정**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개최

- 운영시기 : 2024. 10월
- 주요기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 심의
  -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등 예산 관련 사항 심의·조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주민자치회 등을 거쳐 상정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등

## 4. 예산편성 외 주민참여

### 4-1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모니터링단 운영

- 추진목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예산편성과정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추진과정, 최종 마무리까지 기능 강화
- 대상분야 : 2024회계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 추진방법
  - 사업부서 모니터링 대상 사업별 사업계획서, 추진경과, 민원사항 등 정보 공유
  -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작성 : 사업계획 대비 진행여부, 하자 발생 여부, 지역주민 만족도, 사후관리상태, 예산낭비, 기타 의견 등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
- 결과조치
  - 분과위원회별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서에 시정조치 요구, 해당부서는 조치 결과를 주민참여예산담당자 및 분과 위원회에 통보
  - 주민참여예산담당이 모니터링 결과 종합 보고서 작성
  - 서귀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모니터링 결과 공유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2025년 운영계획 및 사업 선정 시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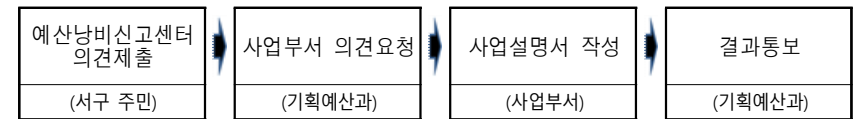
#### □ 주민참여예산 제안자 감리제

- 추진목적 : 제안자가 직접 제안한 사업에 대해 내용대로 진행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제안자가 직접 감리를 하여 사업 완성도 증대

- 대상사업 :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 주요내용
  - 참여예산사업 제안서 작성 시 감리제 희망여부 제출
  - 사업부서에서 제안사업 시행 시 제안자 사전 안내, 분기별 관리카드 작성 및 사업진행 과정, 결과 공유

####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목적 : 구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예산낭비 방지를 통한 재정 건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재정감시활동 활성화
- 대상사업 : 2024년도 구 전체사업
- 주요내용
  - 서구청 홈페이지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 예산낭비 신고 → 사업부서 검토, 결과 공유
- 업무 처리 절차



### 4-2 주요사업 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

- 목적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 청취를 통해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해 공유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 강화
- 운영개요
  - 운영횟수 : 연1회
  - 운영시기 : 2024. 10월

- 의견수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운영방법 : 2025~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 실시
- 운영주체 : 기획예산과

## 5. 홍보 계획

### □ 다양한 채널 활용

- 구 홈페이지 내 주민참여예산 페이지 활용
  - 상시제안 접수창구 마련
  -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 현황 및 결과 공유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공개
  - 타 지자체 및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공유
  - 설문조사, 주민투표 활용한 다양한 의견 수렴
- 구정소식지 및 서구소식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관련 홍보
- 주민참여예산 홍보물품(현수막, 포스터, 리플렛 등) 제작
- 지역행사 진행 시 홍보부스 운영
-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LED 전광판, SNS, 유튜브 등 활용
- 서로e음 어플 팝업배너와 롤링배너 등을 통한 홍보

### □ 접근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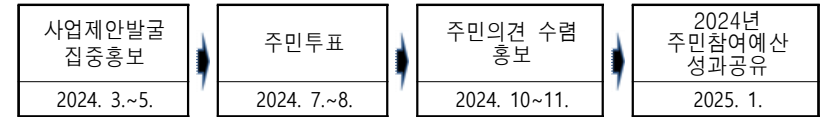
- 제작 홍보물에 QR코드 삽입
- 네이버 폼(비로그인) 등을 활용한 손쉬운 주민 제안사업 접수
-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리플렛 제작·배포
- 주민참여예산사업 표지판 부착으로 주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 □ 맞춤형 홍보

-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사례를 넣은 홍보물 제작
- 아동·청소년 대상 참여예산 홍보영상 활용

### □ 단계별 홍보

- 추진 단계별 집중 홍보 추진



## VI. 행정사항

부서	협조사항
기획예산과	- 추진단계별 세부계획 수립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민관협의회 운영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재정컨설팅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의견 수렴·접수 - 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동지원 - 예산학교 운영 협조(주민 홍보 및 장소 제공)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
주민의견수렴 관련 부서	-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및 다양한 계층 의견수렴하여 주민의견서 제출
기획예산과, 총무과, 복지정책과, 환경관리과, 경제정책과, 도로과	- 주민(분과)위원회 운영 - 2024년 진행 사업 관리카드 작성취합
전부서	- 주민제안사업 검토서 작성 : 현장출장, 비교분석 등을 통한 정확한 자료 제출 -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에 협조 : 분기별 관리카드 제출,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른 조치 결과제출 - 주민숙원사업(다양한 경로의 주민제안사업) 제출
정보화담당관 홍보정책실	- 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진행 협조(구 홈페이지 활용) - 주민제안사업 신청기간 등 홍보 : 구정소식지 및 서구소식 문자알림 서비스

- 붙임 1. 관련 서식 각1부.
- 2. 관련 조례 1부.



## 주민제안사업 검토서

관리번호		추진유형	
분과명		의견제출부서	
<input type="checkbox"/> 제안자			
성명		연락처	
주소			
<input type="checkbox"/> 주민 제안사업 내용			
사업명			
위치			
제안취지 및 사업내용			
소요예산			
산출내역			
<input type="checkbox"/> 제안자 감리제 희망여부		희망 <input type="checkbox"/> , 미희망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위치도 및 관련사진			
위치도		관련사진	

<input type="checkbox"/> 사업부서 검토결과					
실 소요예산	※ 반드시 작성				
의견청취	의견청취일자 : ※ 반드시 작성		수단 : 면담, 유선, 기타		
사업기간					
검토의견	<p>※ 적정 또는 부적정 등에 대한 사유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기재</p> <p>검토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성 : 주민참여예산 취지 및 효과고려</li> <li>- 시급성 : 내년에 해야하는 시급한 사업인지..</li> <li>- 공공성 : 공익목적 달성이나 사회적약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li> <li>- 효과성 : 사업근거 및 타당성</li> <li>- 목표달성도 : 사업기간동안 목표달성 가능여부</li> <li>- 수혜대상 :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여부</li> <li>- 양성평등 고려</li> <li>- 사업비 적정성 등</li> </ul>				
종합검토결과	2025년 예산반영	원안반영 <input type="checkbox"/> , 수정/일부반영 <input type="checkbox"/>			
	미반영	법적 불가 <input type="checkbox"/> , 기추진 <input type="checkbox"/> , 장기계획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 기타 사유 : _____ * 기추진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경우 참여예산으로 반영 가능			
검토부서 (사업부서)	부서명			팀명	
	팀장	이름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			전화번호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 참여예산 분야 : ○○년도 예산편성방향
- 분과명 :
- 의견내용

○

'○○년도 예산편성방향'과 관련하여 \_\_\_\_\_분과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

\_\_\_\_\_분과위원장 성명 (서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견서

- 참여예산 분야 : ○○년도 신규 주요사업 (2억원 이상)
- 분과명 :
- 의견내용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사업개요	의견내용	비고 <small>(증액, 감액 등 기재)</small>
	(○○○과)		○기간: ○위치: ○내용:		
	(○○○과)		○기간: ○위치: ○내용:		
	(○○○과)		○기간: ○위치: ○내용:		
	(○○○과)		○기간: ○위치: ○내용:		

※ 주민참여예산사업 제외

'2025년도 신규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_\_\_\_\_분과위원회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4. . . .

\_\_\_\_\_분과위원장 성명 (서명)



**참여예산위원회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서**

(분과명 :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 2025년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서를 붙임과 같이 결정 제출함.

2024년 월 일

붙 임 : 2025년 제안사업 우선순위 결정 목록 1부. 끝.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                      (서명)

간 사 :                      (서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귀중

○○○○ 분과위원회 (단위:천원)

순위	사 업 명	총사업비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서식 7】 제안사업 구체화 서식

## 사업제목

관리번호	2024-	분과명	○○분과			
제안자성명	○○○	소요예산 (백만원)	계	국비	시비	구비
사업기간	2024. . ~ 2024. .					
사업위치						
추진 필요성 (목적)	글씨체 (HY중고덕 13)					
사업 내용	글씨체 (HY중고덕 13)					
사업 추진 절차	글씨체 (HY중고덕 13)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글씨체 (HY중고덕 13)					
사업 효과	글씨체 (HY중고덕 13)					
숙의 과정 조정 사항	숙의과정 참석여부	- 분과위원회 참석(○회) - 분과위원회와 협치(○회) *협치 - 간담회, 워크숍, 현장방문 등 민관 협의 활동				
	구체화 조정내용	글씨체 (HY중고덕 13)				

○○○과 (부서명)	과장	○○○	☎560-0000
	팀장	○○○	☎560-0000
	담당자	○○○	☎560-0000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관리카드

관리번호      분과명 -00

기준일 : 2024. . .

사업명													
위원회명	00분과위원회	위원회 관리번호		제안자	김00								
부서명		담당자	행정7급 임00	연락처	560-0000								
추진상황	시기 미도래	추진중	완료	추진율									
<input type="checkbox"/> <b>개 요</b> ○ 위 치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  ○ 소요예산 (단위: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r> <th>연 도</th> <th>예 산</th> <th>집 행 액</th> <th>비 고</th> </tr> <tr> <td> </td> <td> </td> <td> </td> <td> </td> </tr> </table>						연 도	예 산	집 행 액	비 고				
연 도	예 산	집 행 액	비 고										
<input type="checkbox"/> <b>관련사진</b>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사진(증·저 화질)			사진(증·저 화질)										

## 참고 1. 관련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5.17, 2018.12.24)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5.17)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개정 2016.5.17)

2. 관내 영업소, 사업체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② 이 조례에서 “동 단위 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6.5.17)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따른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 제2장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제목개정 2020.12.21.]

제7조(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정한다.

③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및 제안 등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1.]

제9조(의견 제출)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제10조(결과 공개)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1.]

제11조

<삭제 2020.12.21.>

제3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목개정 2020.12.21.]

제1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 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21.>

②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8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0.5.18., 2020.12.21.>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주민참여예산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 총수의 10분의 6 이상이 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예산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무작위 추첨방식에 따라 선정된 사람 <개정 2020.12.21.>

2. 구청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0.12.21.>

3. 예산·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주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과 모집일정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동별로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⑥ 위원회 구성에서 청년,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한다. <신설 2020.12.21.>

[제목개정 2020.12.21.]

제13조(위원의 위·해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5.17, 2018.12.24, 2020.5.18.)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2호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주민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원칙)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구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개정 2020.12.21.>

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 활동한다.(개정 2016.5.17)

[제목개정 2020.12.21.]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대표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2.21.>

제16조(기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12.21.>

1.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출

3. 주민제안사업 의견 심의 조정, 구 자체사업에 대한 반영사항 심의 <개정 2020.12.21.>

4.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지원

5. 예산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지원

6.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7.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모니터링<신설 2018.12.24>

8.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7에서 이동)

제17조(회의 개최) ①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주민제안사업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 한다. <개정 2020.12.21.>

④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개정 2020.12.21.>

제18조(분과위원회 등) 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분과위원회는 단·실·국별 또는 2개 이상의 단·실·국을 합하여 8개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1.>

③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④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별 제안사업 주요부서 주무담당으로 구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21.>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21.>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21.> [중전 제5호에서 이동 및 중전 제6호 삭제 <2020.12.21.>]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5.17, 2020.12.21.)

⑧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20.12.21.>

⑨ 청년,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 청소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 등 세부 운영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0.12.21.>

제19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20조(회의록 공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회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 제4장 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제21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지역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립된 주민들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행정안전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경제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보건소장,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08.05, 2016.03.04, 2018.12.24, 2019.11.4., 2020.12.21., 2021.5.3.,2021.7.12., 2023.8.28.)

③ 민관협의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8.12.24)

④ 위원장은 구청장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8.12.24, 2020.12.21.)

제22조(기능)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수립된 주민제안사업의 의견을 심의 <개정 2020.12.21.>
2. 예산편성 반영사업 결정, 자체사업 예산편성 등 예산관련 사항의 심의·조정
3.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3조

삭제 <2016.5.17>

제2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민관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회의 개최) ① 위원장은 매년 구의 예산편성과정에서 분과위원회 활동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개최한다. <개정 2020.12.21.>

② 민관협의회는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참여예산 지원협의회<신설 2018.12.24>

제26조(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참여예산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협의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20.5.18.>

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으로 하되, 별도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21.>

제27조(기능)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개정 2020.12.21.>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제안 <개정 2020.12.21.>
3. 그 밖의 지원협의회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2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18.>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원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원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원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30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지원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그 밖의 사항

제31조

<삭제 2020.12.21.>

제32조(예산학교 운영) 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소양함양을 위하여 예산 학교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예산학교는 상설운영하고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중전 제27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0.12.21.]

제33조(평가보고회 개최)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사항 및 성과 등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중전 제28조에서 이동]

제34조(개정 및 실무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② 구청장은 위원회, 협의회의 활동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1.>

③ 구청장은 위원회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위원 등에 게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5.17, 2020.12.21.)

④ 예산학교의 강사 및 교재 원고료는 「강사료 지급기준」 및 「교재 원고 작성 및 원고료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1.>

[중전 제29조에서 이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중전 제30조에서 이동]

부칙(2011.12.13.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05 조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②생략

③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

④~⑩생략

부칙(2016.3.4 조례 제136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민관협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보건소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⑦ 생략

부칙(2016.5.17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24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총무국장,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 경제교통국장,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35>까지 생략

부칙(2020.5.18.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1조례 제1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관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기존 조례에 따른 주민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조례의 개정 및 위촉기간의 만료 등에도 불구하고 민관협의회의 구성원이 된다.

부칙(2021.5.3 조례 제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부칙(2021.7.12 조례 제188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안전국장”을 “기획재정국장, 행정안전문화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⑬까지 생략